

청주교육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정 1993. 12. 1

4차 개정 2005. 3. 23 규칙 제1123호

5차 개정 2007. 8. 31 규칙 제1185호

6차 개정 2010. 12. 30 규칙 제1260호

7차 개정 2012. 10. 31 규칙 제1302호

8차 개정 2013. 11. 21 규칙 제1325호

9차 개정 2020. 5. 11. 규칙 제152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삭제
2. 교내장학금
3. 교외장학금
4. 국가장학금

제3조(장학금의 재원) ① 장학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삭제
2. 청주교육대학교 기성회의 지출예산에 계상된 장학금
3. 재단법인 청주교육대학교 발전기금재단 목적사업 회계의 지출예산에 계상된 장학금
4.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면제 가능한 입학금 및 수업료
5. 기타 기탁된 각종 교외장학금
6. 국가장학금

② 전항 제1호 및 제6호의 장학금 재원은 목적 외의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 내지 제4호의 장학금 재원은 이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자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
2. 가정형편이 곤란한자로서 품행이 단정한 자

3. 기타 총장이 장학생으로 적격하다고 인정한 자

제5조(장학금 중복지급) ① 교내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 해외 어학연수 또는 해외봉사활동 장학금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외부 장학단체(개인)의 장학금은 각 단체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교내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교내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장학생 선발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전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2.0미만인자 다만, 봉사(간부)장학금, 보훈장학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31>
2. 삭제 <개정 2007. 8. 31>
3.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4. 정규 8학기 초과이수자

제7조(성적우수자 선발기준) 장학생 선발기준을 성적우수자로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전형 시에 정한 동점자 사정원칙에 의한다.

1.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2. 직전학기 평점합계가 높은 자
3.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 누계가 많은 자
4.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합계의 누계가 많은 자
5. 삭제
6. 입학성적이 높은 자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8조(장학위원회) ① 이 규정에 의한 각종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선발 및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위원회의 구성은 재단법인 청주교육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임원 전원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20.5.11.>

③ 위원의 선임방법 및 임기는 전항의 재단법인 청주교육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임원의 그것과 같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장학위원회의 기능)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학금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1조 1항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항

제 3 장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 4 장 교내장학금

제14조(장학금의 종류) ①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장학금
2. 성적장학금
3. 복지장학금
4. 특별장학금
5. 삭제
6. 근로장학금
7. 봉사장학금
8. 가계지원장학금
9. 내리사랑장학금

② 전항의 교내장학금 종류 외에 총장은 새로운 장학금을 신설할 수 있다.

제15조(장학생선발기준) 교내장학금을 지급받는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장학생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로 한다.
2. 성적장학생은 직전학기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

우에는 입학성적으로 한다.

3. 복지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로서 읍면동장이 확인한 자(매년초 증명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4. 특별장학생은 본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자와 성실하면서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자 중에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5. 삭제

6. 근로장학생은 근로를 조건으로 각 부서의 업무에 근로하는 자로 부서(학과)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7. 봉사장학생은 학생자치기구 간부 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8. 가계지원장학생은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자 중에서 신청에 의해 선발된 자로 한다.

9. 내리사랑장학생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장학금 수혜기간) ① 장학금 수혜기간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장학금 및 지급대상자수의 결정) 장학 금액 및 지급대상자수는 제3조에 의한 당해 연도의 장학금 재원 범위 내에서 매 학년초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8조(장학금지급대상자 선발) 장학금지급대상자는 제15조의 선발기준에 의거 매학기별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19조(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등록금 면제대상) 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는 제14조 제1호 내지 제3호와 제8호의 장학금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 기성회비등록금 범위 내에서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지급은 당해 학기 등록금에서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이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장학금지급 제한)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미등록 휴학한 때
2.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장학생자격을 상실한 때
4. 기타 장학금지급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때

② 전항의 경우 장학금지급대상자를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타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22조(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삭제

②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여 그 공로가 특히 인정되는 자와 성실하면서 가정형편이 매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 5 장 교외장학금

제25조(교외장학생의 추천) 교외장학단체(개인포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외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외장학단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지명한 경우와 선발기준이나 조건을 제시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으나 대상자가 경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2. 교외장학단체에서 지급대상인원만을 정하여 추천 의뢰한 경우와 선발기준이나 조건을 제시하여 추천을 의뢰하여 경합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제26조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적용특례) 1989학년도 이전의 입학자에게는 제3장과 제14조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규정의 폐지)종전의 청주교육대학 장학금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31 규칙 제118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30. 규칙 제126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31. 규칙 제130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21. 규칙 제132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11. 규칙 제152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